

의안번호	제 512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6년 11월 22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1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원일 : 2016년 11월 22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법률의 제명 및 용어 수정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의 제명이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됨.(안 제2조제3항의가목)
-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의 제명이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로 변경됨.(안 제2조제3항의나목)
-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의 제명이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으로 변경됨.(안 제2조제3항의다목)
- 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의 제명이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으로, 일정등급 “(「학교급식법행규칙」)”을 “(「학교급식법 시행규칙」)”으로 변경됨.(안 제2조제3항의라목)
- 「영유아보육법」의 개정으로 “보육시설”이 “어린이집”으로 변경됨.(안 제4조제1항의제3호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비용추계서 및 재원 조달방안 : 해당 없음

6. 관련법령 : 해당 없음

7.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: 해당 없음

8. 입법예고 결과 : (단순 법 제명 수정으로) 해당 없음

9. 기타사항

- (부패영향 평가, 규제사항, 예산조치) 해당 없음

- (성별영향평가 : 완료)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로 같음

10. 제안자 의견

○상위 인용 법률의 제명 및 용어 수정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
규를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개정 원안 처리를 요청함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의가목 중 “친환경농업육성법”을 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”로 한다.

제2조제3항의나목 중 “농산물품질관리법”을 “농수산물 품질관리법”으로 한다.

제2조제3항의다목 중 “축산물가공처리법”을 “축산물 위생관리법”으로, 일정등급 “(「학교급식법행규칙」)”을 “(「학교급식법 시행규칙」)”으로 한다.

제2조제3항의라목 중 “수산물품질관리법”을 “농수산물 품질관리법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의제3호 중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1.~2. (생략) 3. (생략)	제2조(정의) 1.~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
가. 「 <u>친환경농업육성법</u> 」에 따른 친환경농산물	가. 「 <u>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</u> 」 -- -----.
나. 「 <u>농산물품질관리법</u> 」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	나. 「 <u>농수산물 품질관리법</u> 」 ----- -----
다. 「축산법」 및 「 <u>축산물가공처리법</u> 」에 따른 일정등급(「 <u>학교급식법</u> 행규칙」)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	다. 「축산법」 및 「 <u>축산물 위생관리법</u> 」에 따른 일정등급(「 <u>학교급식법</u> 시행규칙」)----- ----- --
라. 「 <u>수산물품질관리법</u> 」에 따른 품질인증품(원양산 포함)	라. 「 <u>농수산물 품질관리법</u> 」에 --- -----
마.~사. (생략)	마.~사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지원대상) ①(생략)	제4조(지원대상) ①(현행과 같음)
1. ~ 2. (생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<u>보육시설</u>	3. ----- 따른 <u>어린이집</u>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
<관련규정 법 제명 개정 연혁>

1. 친환경농업육성법 → [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](#)
 - 개정일 : 2012. 6. 1.(법률 제11459호)
 - 주요내용 : 법 제명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을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
2. 농산물품질관리법, 수산물품질관리법 → [농수산물 품질관리법](#)
 - 개정일 : 2011. 7. 21.(법률 제10885호)
 - 주요내용 : 수산 관련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과 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을 통합
3. 축산물가공처리법 → [축산물 위생관리법](#)
 - 개정일 : 2010. 5. 25.(법률 제10310호)
 - 주요내용
 - 법 제명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을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로 변경
 -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
4. 보육시설→ [어린이집](#)
 - 개정일 : 2011. 6. 7. (법률 제10789호)
 - 주요내용 :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의 보육시설 명칭이 어린이집('11. 12. 2.)으로 변경됨에 따라 [영유아보육법제2조\(정의\)제2항 보육시설→어린이집으로 변경](#)